

주야간보호 44 급여제공결과 평가	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. (5. 급여제공결과 / 1. 수급자상태 / 1. 결과평가)	점수 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

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,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
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.

평가기준			평가방법
①	기관	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	기록, 전산
②	기관	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함	
③	기관	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	
		필수사항: 일자, 총평 또는 종합소견, 작성자명	
④	기관	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	

■ 평가기준 ③,④번은 2023.1월부터 확인함

▣ 확인방법

기준①

-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,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
-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

▶ 모든 수급자에 대해 주1회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

- 상태의 변화가 없는경우는 요양급여의 특이사항을 기록.

기준②

- 제공여부는 제공대장(일자, 방법, 수령자 또는 수취인),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

▶ 케어포 청구시 급여제공 기록지 포함하여 청구

- 가정통신문에 급여제공 기록지 포함하여 제공

기준③
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

※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: 장기요양기관
로그인/급여계약/급여제공계획서/급여제공모니터링

▶ 작성대상 예시 : 2023년 1월 ~ 11월까지 입소자는 2023년 12월까지
작성대상이지만
2023년 12월중에 입소자는 관찰기간이 부족하여 2023년도에는 급여제공 결과평가
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.

총평작성

▶ 급여제공결과 평가의 목적

1. 급여제공계획이 현재의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지 확인.
2. 급여제공계획대로 급여가 이루어 졌는지
3.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급여계획인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 재 작성

■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으로 급여 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?

신체활동지원 ☐ 인지활동•정서지원 ☐ 건강관리•간호처치 ☐ 기능회복훈련 ☐

■ 수급자의 욕구나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 되었는지 ? (☐ 반영 ☐ 미반영)

■ 급여제공계획 이후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는지 ? (☐ 상태변화 ☐ 기능유지)

■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지 ?

☐ 30일 이내 재작성 ☐ 필요없음 (급여계획 유지)

급여제공결과평가 예시

기준④

■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

▶ 모든 수급자가 아닌, 평가결과 상태변화로 인하여 급여제공 계획이 필요한 수급자.

▶ **급여제공결과평가**를 포함한 연 1회 급여업무 (위험도 평가, 욕구사정, 급여제공계획, 급여제공결과 평가)

